

② 과학기술연금 제도

새롭고 건강한 '연금제도의 역할과 모형'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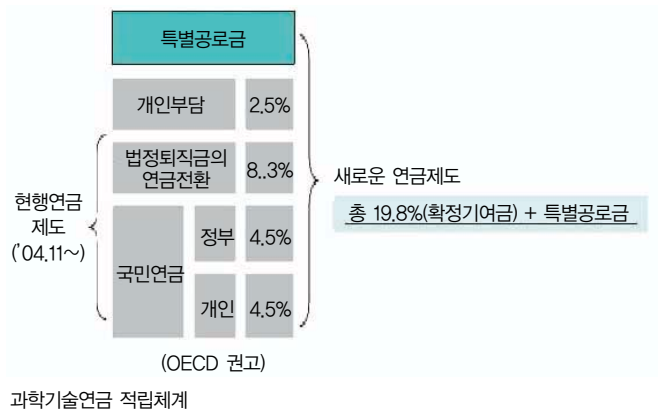
글 | 노환진_ 과학기술부 출연기관육성팀 과장 hjnho@most.go.k

정부의 R&D투자는 내년에 10조 원이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매년 예산의 평균증가율을 웃도는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이며 정부연구비를 확대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R&D투자가 가장 급속하게 확대되는 국가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여건이지만 돌이켜보면, 과학기술인에게 빠이픈 시련이 있었다. 바로 IMF 때다. 그때, 연구원이 대량 해고되고 정년이 단축되었으며 이 공계 기피현상도 생겨났다. 기업의 경우 연구소의 축소·폐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아직도 과학기술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2005년 법적 근거 마련, 정부 2천억 원 출연 추진

그 이후 정부차원에서 이공계 사기진작 대책이 마련되고 연구원 복지증진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사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FTA 확대, 외국인근로자 100만 돌파, 유엔사무총장 배출 등 국제화의 바람을 타고 고급인재의 유출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공계 박사의 미국잔류 비율은 1992~95년간 20.2%에서 2000~2003년간 46.3%로 급증하게 되었으며, 기술유출을 동반한 인력유출은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한다. 중국의 기술추적도 알고 보면 우리의 기술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2003년에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고 2005년 말부터 '과학기술연금' 제도 설치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국제수준의 처우가 아니고서는 유능한 인재를 잡아두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의 개발, 국방연구, 국민보건증진과 같은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다.

각종 정책 중에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이 바로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과학기술연금의 설치에 있음을 정부는 인식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2002년 12월)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였으며 연금제도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2005년 11월)을 통해 과학기술연금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쪽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후 노사협의, OECD 권고, 대통령 지시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학기술연금 제도의 설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부처간 협의였다.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정부측의 직접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과학기술부에서는 기금 수익사업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금확보에 주력하게 되었다. 마침내 과학기술부총리의 건의와 대통령의 특단의 정책결정으로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이 태동하게 되었고, 그 핵심사업으로 '특별공로금'을 연금에 추가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듯 과학기술연금 제도는 정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정책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총수입 26조4천960억 원, 총지출 26조7천678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서며 2060년에는

적립기금 잔액이 35조3천308억 원 적자로 추락하면서 기금 자체가 고갈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아울러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2026년에는 적립금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연금의 경우 이미 2007년도 국고보조금이 1조9천664억 원에 이르고 있고, 2010년에는 3조1천833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보전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적립과 연금지급이 일치하는 않는 저부담, 고급여 설계 및 설계당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잘못된 미래 예측이 이러한 재정문제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4대연금은 장차 재정파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급여수준 인하와 개인부담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반면 과학기술연금은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금을 특별공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금자체의 고갈문제가 없다는 합리성·윤리성이 있다.

과학기술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제도다. 2001년 9월 OECD는 한국경제검토회의의 특별주제로 선정되었던 '고령화에 대한 준비(보고서)'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3단계 기둥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첫째 기둥은 강제적용의 공적연금(기초연금)을 두어 소득대체율을 40%로 하고, 두 번째 기둥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체제로 전환하며, 세 번째 기둥은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출연기관은 별도의 연금제도 없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일시불)으로 노후를 설계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며, 이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설계가 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OECD 권고안을 따라 과학기술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과학기술연금 수혜수준, 사학연금의 83~86%

과학기술연금은 국민연금(소득의 9%)을 기반으로 하는 2층 구조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퇴직금(소득의 8.3%)을 확정기여형(DC) 연금으로 전환하고 개인이 2.5%를 추가 부담하는 대신 정부는 총 2천억 원의 특별지원자금을 조성하여 그 수익금을 퇴직하는 연구원에게 '특별공로금'의 형태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별공로금의 지급은 출연기금을 2천억 원 조성하였을 경우 소득의 약 1.4% 이상의 적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금의 수혜는 법정부담금(소득의 8.3%)과 개인부담금(소득의 2.5%)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원금, 그리고 특별공로



과학기술연금의 급여체계

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출연기관의 32세(선임1호) 신규연구원이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연구원이 받는 퇴직연금 수준은 현행 퇴직금 대비 117%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해서 특별공로금의 수혜 효과만을 고려했을 때다.

이렇게 설계될 경우, 과학기술연금의 수혜수준은 사학연금의 약 83~86%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보인다. 간혹 사학연금을 부러워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학연금은 그 자체가 저부담·고지급으로 설계된 모순이 있는 설계이다. 장기적으로는 수혜수준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인식되도록 출연기금을 추가 확충하는 등 정부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금운용을 전문화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과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새롭고 건강한 연금제도의 모형을 제시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4대 공적연금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때에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금 제도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차 연금제도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노후복지대책을 위한 노력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다. 개개 연구원의 입장에서 정부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기술연금은 막 첫걸음을 내디딘 어린아이처럼 근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향후 과학기술연금이 명실 공히 성공한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멀지않아 과학기술인이 맘 편하게 연구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국의 미래 한국을 기대해 본다. ㉔



글쓴이는 서울공대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